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 26 선고 2020가단8863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훈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허지선, 김광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변론 종결 2021. 10. 27.

판결 선고 2022. 1. 26.

주 문

1.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52,893,15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52,893,1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와 C은 2018. 10. 11. '원고가 C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고 C으로부터 2018. 11.부터 2023. 9.까지 매월 11일에 분할 변제받는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8년 제602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이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공정증서 채권'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C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이 법원 2020가단81826)를 제기하여, 2021. 6. 18.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고, 위 강제조정결정은 2021. 7. 7. 그대로 확정되었다. C은 현재 위 강제조정결정의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1. C은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돈 중 20,000,000원을 2021. 7. 31.까지, 20,000,000원을 2021. 9. 30.까지, 나머지 10,000,000원을 2021. 11. 30.까지 각 지급한다. 만일 C이 위 각 지급기일에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즉시 분할변제의 이익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게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급을 지체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C과 원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8년 제602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제1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C과 피고의 증여계약 등

1) E가 2014. 7. 5. C에게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2014. 7.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14. 7.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억 2,600만 원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 C은 2019. 3. 14. 부친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9. 3.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96,038,919원이었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4.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고, 2019. 4. 18.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440만 원인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C의 재산상태

1)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G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6,628원, 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147,399원, F에 대한 예금채권 49,975원, 990,250원, H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314,420원 합계 1,508,672원과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다. 이 사건 부동산의 2020. 8.경 기준 시가는 약 2억 5,000만 원 정도인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부터 큰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 채무 외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채권자들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주식회사 F	2014.7.18.	96,038,919
I 주식회사	2018.9.8.	2,736,581
주식회사 H	2018.8.21.	24,154,730
주식회사 J	2018.9.10.	4,654,433
IBK기업은행	2017.12.21.	26,500,000
합계		154,084,66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은행장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실제로 차용하지 않았고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실제 채무액이 11,148,990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그 채권의 내용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던 상황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C의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시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C로서는 그로 인해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겨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3자간 명의신탁계약에 관한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와 C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되 그 등기명의만을 C으로 하는 내용의 3자간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명의수탁자인 C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2. 1.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한 후, 2016. 9. 27. 전출하였다가 2016. 12. 29. 다시 전입한 사실, F에 대한 대출금이자 출금되는 C의

계좌로 피고나 피고의 처인 K이 일정액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와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실제로 부담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데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C일 뿐 피고가 실질적인 매수인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C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의 이자를 상당 부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의의 수익자에 관한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처에 대한 병원비 등을 마련하고 무주택청약 등을 할 수 없는 C의 불이익을 덜어주기 위해 명의신탁자로서 소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C으로부터 증여받았을 뿐, C의 채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사해의사 또는 수익자의 이에 대한 악의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이해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천신용보증재단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19323)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21. 2. 2.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선의일 수 있다는 이유로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2021. 2. 24.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이를 아무런 대가 없이 증여받은 점, 피고가 C의 부친으로서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래 지속적으로 금전거래를 계속해왔음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C의 재산상태를 의심하거나 다른 일반채권자의 존재를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결과만으로는 앞서 본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반복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등 참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말소되지 아니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288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새로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원상회복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므로(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참조),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 채권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52,893,151원[= 5,000만 원 + 5,000만 원 $\times$ 0.24 $\times$ 88일(2021. 8. 1.부터 2021. 10. 27.까지)/365일, 원 미만 반올림]이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2억 5,000만 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96,038,919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153,961,081원[= 2억 5,000만 원 - 96,038,919원]인데, 그 가액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변동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위 공동담보가액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배상은 원고의 채권액인 52,893,151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52,893,15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2,893,1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정중론

별지